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년 10월 21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02년 10월 28일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김 해 운

나. 제안이유

- '95년 도·농통합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98. 4. 27 수립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2001. 8. 16 변경결정(도시지역)된 이후 구미도시계획, 선산도시계획, 고아읍도시계획을 하나의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김천, 칠곡지역을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금오산 도립공원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구미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여 그 내용 중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의견청취 대상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도시기반시설) : 주간선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광장, 공원, 대학, 골프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조서 : 별도

라. 참고사항

- 도시계획법 제22조, 제32조, 제3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제7항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완 진

-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상업·공업·녹지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의회는 함께 노력하여 도시가 환경 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함.
- 도시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시행하고 그 계획의 승인 또는 결정은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이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절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은
1995년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수립된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도 구미시 인구 470,000명에 대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으로서,
당초 김천시와 칠곡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구역별 도시계획수립에 따라 타시군 지역을 제외하고 금오산도립공원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집행되므로 그 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총면적 617.33㎢ 중 176.356㎢가 도시계획구역임.

- 본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주게 될 사항은 없는지?
- 지역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의혹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치우쳐서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사항은 없는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민원이 야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변경의견 제시